

| |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 번호 | 521 |
|----------|-----|

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전부 개정규정안

검토보고서

운영위원회

**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
규정 전부 개정규정안**

검 토 보 고 서

2025. 10. 21.

전문위원 신정경

1. 제안경위

- 가. 제출자 : 이호건의원외 17명
- 나. 의안번호 : 제521호
- 다. 제출일자 : 2025.9.25.
- 라. 회부일자 : 2025.10.14.

2. 제안이유

「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 규칙」의 개정과 국민권익위원회의 「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」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전자회의록의 공개 기한 규정 및 전자임시회의록을 일반에게 공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일부 조항의 문구를 수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용어의 정의를 규정(안 제2조)
- 나. 전자회의록 공표 관련 조문을 명확히 하여 신설(안 제6조)
- 다. 신설된 조항에 맞추어 기존 조문의 순서 등을 조정
- 라. 그 밖에 『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』에 따라 정비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」 제41조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.
- 다. 사전협의 : 의회사무국
- 라. 입법예고: 2025. 9. 30. ~ 2025. 10. 4.(의견없음)

5. 검토의견

가. 주요내용

| 개정항목 | 주요개정내용 | 현행규정과의 차이점 |
|------------|---|---|
| 안 제2조 | 회의록을 책자회의록(보존, 비공개)과 전자회의록(전자임시, 전자)으로 구분하고 각 용어를 정의함. | '배부회의록'을 삭제하고 이미 운영 중인 '전자회의록'**에 대한 규정 및 용어 정의를 신설함. |
| 안 제6조 | 전자회의록을 각 회기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하도록 공개 기한을 명시함. | 공개 기한이 명시되지 않았던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함. (권익위 권고 핵심 사항) |
| 안 제6조 | 회의록 원고 완료 즉시 전자임시회의록을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함 | 임시회의록의 공개 방식을 '전자적 게재'로 구체화하여 신속성을 확보함. |
| 안 제4조, 제5조 | 보존 및 비공개 회의록 열람·복사를 허가 받은 의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 또는 복사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는 의무를 신설함. | 비공개 정보의 유출 방지 및 기밀유지를 위한 의원의 책임을 강화함. |
| 안 제9조 | 자구 정정 기준에 "특정한 어휘를 유사한 어휘로 변경하는 경우"를 추가하여 발언 내용의 정밀도를 높임. | 기준 정정 범위를 확대함. |

나. 총평

본 전부개정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권고를 적극 수용하여, 운영 중인 전자회의록의 공개 기준을 훈령에 명시하고 공개 기한을 명확히 설정함으로써 의회 투명성과 구민 알 권리 향상시

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개정안임.

다. 주요 검토 사항

-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내용인 공개 기한을 명확하기 위해 회기 종료 후 30일 이내 공개 기한을 명시함으로써, 정보 접근성을 높인 것은 권고 사항을 충실히 반영한 핵심 조치임.
또한 이미 시행 중인 전자회의록의 공개 방식과 정의를 훈령에 명문화하여 행정의 근거를 명확히 하였음.
- 안 제9조에서 '특정한 어휘를 유사한 어휘로 변경하는 경우'를 정정 범위에 추가한 것은 발언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음. 다만, '유사한 어휘'는 발언의 정치적 취지나 강도를 변경할 소지가 있으므로, 단순한 동의어 또는 관용적 표현으로 치환하여 발언의 논리적 결론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장의 엄격한 해석 및 적용이 요구됨.

라. 결론

상기 검토 결과를 종합할 때, 본 전부개정규정안은 구의회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구민의 알 권리와 신장하는 데 기여하므로 원안 가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.